

# 「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04월 06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4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인구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여가시설의 대표적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에 제정된 기존조례를 현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근거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경로당” 및 “경로당 시설비”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)
- 나.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,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다. 경로당 운영·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을 위한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규정 신설(안 제5조 ~ 제10조)
- 라. 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 등 지원 항목 추가 신설(안 제11조)
- 마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범경로당과 모범어르신에 관한 포상규정 신설(안 제13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활동 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기존의 조례를 내용을 보완하여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 함에 취지가 있으며

○ 개정부분 주요내용은

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**군수의 책무로 신설**하였으며,  
경로당 운영·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**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규정**을 신설하였고,

경로당 지원 항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으며

<p>&lt;기 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경로당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</li><li>·경로당 운영비, 냉·난방비</li><li>·경로당 이용자의 주·부식비</li><li>·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</li><li>·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유지·관리비</li></ul>	→	<p>기존 6개 항목 + &lt;개정안추가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경로당 물품 구입비</li><li>·살균소독 및 방역비</li><li>·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비</li><li>·경로당 양곡구입 및 택배비</li><li>·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</li><li>·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</li></ul>
--	---	--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